#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년 인권경영보고서

2023. 12.



# 목 차

[요약] 2023년 KODDI 인권경영 주요 활동 ········ 1
I. 인권경영 추진개요3
<b>п.</b> 인권경영 추진체계 ······· 5
Ⅲ. 인권정책선언7
IV. 인권영향평가 결과 ······9
V. 인권경영지수 시범측정 결과 ···································
VI. 인권침해 구제절차 ······· 27
VII. 향후 계획 ······· 29

### [요약] 2023년 KODDI 인권경영 주요 활동 -

### □ 인권경영 체계 강화

-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23.6.)
- (목표)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전략) 인권경영 체계 강화, 인권경영 내재화 및 확산, 인권경영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강화
- 인권경영위원회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23.8.3.)
- **(위원회 구성)** 총 7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위원회 역할)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등
- (회의 안건) 위촉 및 위원장 선출, 인권경영 추진계획 보고,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검토
- 인권경영지침 개정('23.8.21.) 개선
- (사유) 국가인권위「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22.7.)」를 반영하여 지침 개정
- (내용) 인권정책선언의 대내외 확산 강화, 인권경영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명시 등
- 인권경영추진단 구성('23.9.) 및 회의 개최('23.9.)
- (추진단 구성) 총 12명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구성
- (추진단 역할) 인권영향평가 지표 발굴 및 자체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권고·개선사항 보완 등
- 인권경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23.12.19.)
  - (회의 안건)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2023년 인권경영활동 보고 및 개선 논의

### □ 인권경영 내재화 및 확산

- KODDI 노사공동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23.9.19.) **™**
- 인권이슈와 이해관계자(더행복한일터만들기추지단,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新인권경영헌장 선언
- 이룸센터 입주단체 대상 인권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23.12.21,) 집录
- 이룸센터 입주단체 대상 캠페인(인권퀴즈, 인권경영헌장 스티커 배포, 인권이슈 설문) 실시
- 인권경영보고서 대내외 공개('23.12.)
  - '23년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이 담긴 인권경영보고서 대내외 공개

### [요약] 2023년 KODDI 인권경영 주요 활동 -

### □ 인권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강화

-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자체평가 실시('23.9.~10.)
  - 인권경영추진단(지표별 담당부서의 담당자)에서 증빙에 기반을 둔 1차 자체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최종평가 실시('23.11.)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별 전문 분야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최종 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결과보고('23.12.)
- 종합점수 98%이며, 지표 5개(기관운영4, 주요사업1)가 보완필요로 나타남
- 인권경영지수(KODDI-HRI) 개발 및 시범측정 완료('23.12.) **집**
- 인권경영의 성과를 PDCA관점에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지수 지표 개발
- 인권경영지수 측정 결과 총점 90점이며, 환류(Action)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미 인권경영 추진개요**

### □ 관련 근거

- O 국가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18. 8.)
-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항목에 인권경영 반영」('19. 10.)
- 국가인권위,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고」('22.7.)
- 정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22.8.)
- O 우리 원「인권경영지침」제5조 및 2023년 인권경영 추진계획('23.6.)

### □ 추진 배경

- O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 문제로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존중의 책임이 요구됨.
- O ESG경영의 핵심인 인권을 고려한 경영방식을 강화하여 사회전반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경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함.

## □ 2023년 주요 성과

구 분	내 용
	<ul><li>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23.6.)</li></ul>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23.7.)
	• 인권경영위원회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23.8.3.)
	• 인권경영지침 개정('23.8.21.) <sup>개선</sup>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23.8.)
	• 인권경영추진단 구성('23.9.)
	• 新인권경영헌장 대내외 의견 조회 실시('23.9.)
2023년	• KODDI 노사공동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23.9.19.) 개선
(도입6년차)	• 인권경영추진단 1차 회의 개최('23.9.)
	•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자체평가 실시('23.9.~10.)
	•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최종평가 실시('23.11.)
	• 인권경영지수(KODDI-HRI) 개발 및 시범측정 완료('23.12.) 신규
	• 인권경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23.12.19.)
	•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결과보고('23.12.)
	• 이룸센터 입주단체 대상 인권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23.12.21.)
	• 인권경영보고서 대내외 공개('23.12.)

# □ [참고] 그간의 성과

구 분	내 용
<b>2018년</b> (도입1년차)	<ul> <li>인권경영 이행 계획 수립('18.11.)</li> <li>인권경영지침 제정('18.12.24)</li> </ul>
<b>2019년</b> (도입2년차)	<ul> <li>인권경영위원회 위촉('19.3.26.)</li> <li>인권경영헌장 제정 및 공표('19.4.19.)</li> <li>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실시 계획 수립('19.10.)</li> <li>인권경영추진단 구성 및 교육 실시('19.11.)</li> <li>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자체평가 실시('19.11.~'19.12.)</li> <li>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최종평가 실시('19.12.)</li> <li>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결과보고('19.12.)</li> </ul>
<b>2020년</b> (도입3년차)	<ul> <li>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20.8.)</li> <li>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20.12.)</li> <li>인권경영지침 개정('20.12.31.)</li> </ul>
<b>2021년</b> (도입4년차)	<ul> <li>인권경영지침 개정('21.10.5.)</li> <li>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제2기 인권경영위원회 구성('21.10.)</li> <li>인권경영추진단 구성('21.11.)</li> <li>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자체평가 실시('21.11.)</li> <li>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최종평가 실시('21.11.)</li> <li>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결과보고('21.12.)</li> </ul>
<b>2022년</b> (도입5년차)	• 인권영향평가보고서 권고 개선사항 이행현황 점검

# 인권경영 추진 체계

# \_ 인권경영 전략체계도

비전

장애인과 함께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

목 표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중장기 로드맵

### ′19~′20년

제1기 도입기 (인권경영 체제 구축)

- 인권경영 기반 조성
-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관운영 분야)

### ′21~′23년

 $\rightarrow$ 

### 제2기 성장기 (지속개선 및 확대)

- 인궈경영 내재화
- 인권영향평가 후속평가 실시(기관운영)
- 인권영향평가 실시 (주요사업)

### '24년 이후

 $\rightarrow$ 

### 제3기 성숙기 (인권경영 고도화)

- 인권경영 확대화
- 인권영향평가 후속평가 실시(기관운영·주요사업)

추지저략

### 인권경영 체계 강화

### 인권경영 내재화 및 확산

### 인권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강화

추 지 과 제

- 인권경영지침 및 추진체계 정비
-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경영 전 직원이 참여하는 KODDI 추진단 운영 활성화
-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선사항 발굴 및 시행
-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확산
- 신규 기관장의 인권경영 선어을 통한 인권존중 의지 대내외 전파
- 국내외 인권 네트워크 활성화 인권알리미를 통한 기관의 인권경영 현황 공개
- 인권경영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 인권경영 성과관리 강화
-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관운영, 주요사업)

### 성고지표 인권영향평가 권고과제 이행률 인권경영 교육 이수율

인권경영지수(KODDI-HRI) 결과

실 행 체계

### 전담(주관)부서

전략기회부 사회적가치팀

- 인권경영 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지표 마련

### 실행부서

인권경영 총괄

기관운영, 주요사업 해당업무 담당부서 인권경영추진단

- 인권영향평가 수행
- 대내·외 인권 보호

### 인권경영 자문

원장

인권경영위원회 대내외 전문가 참여

- 인권영향평가 검토
- 인권경영 추진 점검

### 인권침해 구제

법무감사팀

- 인권침해 사건 접수
- 사건 조사 및 구제

평가 화류

### 대내

- 인권영향평가(자체)
- 내부청렴도
- 경영전략 공유도 조사

### 대외

- 인권영향평가(전문가)
- 종합청렴도 평가
- 고객만족도 조사

# □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경영추진단 역할 · 구성

### 〈 2023년 인권경영위원회 〉

- ❖ (역할)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등
- **❖ (구성)** 총 7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김 주 연	서울노동법률원 노무사	위원장
2	외부 위원	이 찬 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3	(4)	문 상 윤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팀장	
4		윤 문 희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5		오 남 주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영본부장	
6	내부 위원 (3)	김 태 규	한국장애인개발원 법무감사팀 팀장	
7	(3)	최 동 규	한국장애인개발원 근로자위원(의장)	

### 〈 2023년 인권경영추진단 〉

- ❖ (역할) 인권영향평가 지표 발굴 및 자체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개선사항 보완
- **⋄ (구성)** 총 12명

순번	소속 및 직위	이름	역할
1	전략기획부 부장	이 진 숙	인권경영담당관
2	사회적가치팀 팀장	이 유 미	인권경영추진단 간사
3	사회적가치팀 대리	최 지 수	인권경영추진단 간사
4	법무감사팀 대리	손 동 준	
5	소통홍보팀 과장	이 승 재	
6	인사혁신팀 팀장	박 상 민	
7	인사혁신팀 차장	박 지 연	
8	인사혁신팀 과장	장 주 연	인권경영추진단 단원
9	인사혁신팀 대리	이 지 수	
10	인사혁신팀 대리	소 병 민	
11	안전관리팀 대리	김 지 원	
12	UD환경정책기획팀 대리	김 나 현	

# Ⅲ 인권정책선언

### □ 2023년 新인권경영헌장 검토

- O 지난 2019년 처음 선포된 우리 원 인권경영헌장에 ①기관의 주요 인권이슈와 ②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검토를 진행함.
  - (1차)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인권위 권고 및 이전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을 통해 발굴된 주요 인권이슈\*를 반영한 新인권경영헌장 초안 마련 \* 차별금지 요소 확대, 이해관계자의 인권경영 실천 지원 확대
  - (2차) 우리 원 더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단\*\*(내부)과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의 인권경영헌장 초안 검토 및 개정의견 반영 완료 \*\* 인권침해 사전예방 노력 확대, \*\*\*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필요

### □ 노사공동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O 일 시: 2023. 9. 19.(화) 13:00

○ 장 소: 이룸센터 7층 대회의실



사용자위원(이경혜, 오남주, 최웅선, 이진숙, 김교형), 근로자위원(최동규, 박진희, 도금비, 허석현), 간사(박상민)

### □ 2023년 新인권경영헌장(2023.9.19.)

- 기관 누리집 내 인권경영 게시판에 인권경영헌장 공개
- O 기관 누리집 내 이슈리드를 통해 新인권경영헌장 주요 개정 내용 및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알림
- 사내 업무망 내 공지사항을 통해 인권경영헌장 선포
- O 이룸센터(개발원 관리 및 입주) 입주단체 대상 인권경영헌장 스티커 배포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통합 구현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대표기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인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이행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장애, 학력, 성별, 나이, 지역, 인종, 종교, 직종,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여가 보장 등 근무환경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며 상생발전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 범위 내의 지역사회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사전 예방하며,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권존중에 기반한 정책개발 및 자립지원 활동에 앞장선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인권경영헌장(2023. 9. 19. 선포)

# ١٧

#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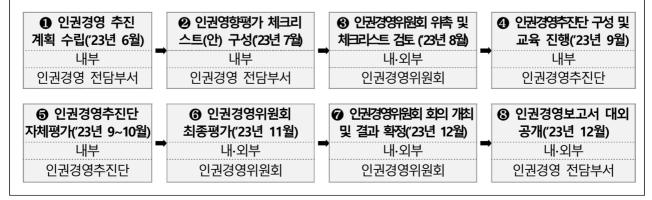
### [요약] 2023년 KODDI 인권영향평가 결과

### □ 평가 개요

O (평가근거)「인권경영지침」제20조 및 2023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제20조(인권영향평가) 개발원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목적) 기관의 경영활동 또는 사업 관계의 결과로 인해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 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모색
- (평가분야) 기관운영 11개 분야(90개 지표), 주요사업 2개 분야(14개 지표)
  - 기관운영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등 11개 분야
  - 주요사업 :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장애인편의증진사업' 대상 2개 분야
- (평가주체 및 방법)
  - ① 인권경영추진단 자체평가
    - · 지표별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권경영추진단을 구성한 후 증빙에 기반을 둔 자체평가 실시
  - ② 인권경영위원회 최종평가
    - · 1차 자체평가 결과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한 최종 평가 실시 후 회의를 통해 결과 확정
- (추진 과정)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한 인권경영보고서를 '23년 말 대외 공개 예정 ※국가인권위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참(인권경영의 공개)' 준수



# ── 【요약】2023년 KODDI 인권영향평가 결과 ─

# □ 평가 결과

O (종합 평가결과) '23년 종합점수 98% (기관운영 98%, 주요사업 97%)

	전체				종합 점수			
구분	지표수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00% 만점 기준)
종 합	104개	94개	5개	-	-	5개	<b>→</b>	98%
기관운영	90개	81개	4개	-	-	5개	<b>→</b>	98%
주요사업	14개	13개	1개	-	-	-	$\rightarrow$	97%

<sup>※</sup> 기관과 해당 없는 지표의 경우 '24년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구성 시 포함 여부 검토 예정

O (분야별 결과) 총 13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į	평가결괴	•		분야별 점수
구분	분야	지표수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00% 만점 기준)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13	11	2				94%
	고용상의 비차별	16	16					100%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13	10				3	100%
	강제 노동의 금지	5	5					100%
	산업 안전 보장	16	13	1			2	97%
기관 운영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	2					100%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3	3					100%
	환경권 보장	7	6	1				94%
	갑질근절	4	4					1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	7					100%
	성희롱·성폭력 예방	4	4					100%
주요	사업운영	8	8					100%
사업	교육운영	6	5	1				93%

# ---- 【요약】2023년 KODDI 인권영향평가 결과 ----

# O 주요 평가의견

구분	개선의견
기관운영	<ul> <li>▶ 인권영향평가의 매년 실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인권경영 성과의 객관적인 측정방안 마련, 구제절차에 대한 전 직원 대상 안내 등 인권경영체제 구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li> <li>▶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를 위해 취업규칙 상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 내용이 들어가도록 보완이 필요하며, '임신을 한 노동 자가 원할 경우 쉬운 근로로 전환'하는 내용도 근무지 변경과는 별개의 내용이 므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li> <li>▶ 환경권 보장을 위해 기관의 차량 대폐차시 전기자동차로 교체를 권장하며, 이름센터 합동 소방훈련 시 개발원 직원들이 건물 내 장애인단체의 중증장애인들을 도우면서 함께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보완이 필요함.</li> <li>▶ 갑질 근절,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를 위해 기존 온라인 교육 이외에 세미나, 대면교육 등 더욱 효과적인 교육방향성 마련을 권장함.</li> </ul>
주요사업	<ul> <li>▶ 장애인편의증진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모두가 누리는 휴식' 등 행사를 통해 다양한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인식개선하는 확산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함.</li> <li>▶ 교육 운영시 수강(희망)자 대상 교육비 환불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인권존중의무 이행에 관한 서약서를 받는 등 교육 내용에도 인권침해요소가 없도록 사전 예방적 보완이 필요함.</li> </ul>

# 추진 개요

### □ 평가근거

O「인권경영지침」제20조

**제20조(인권영향평가)** 개발원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O 2023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 '인권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강화'

### □ 평가목적

○ 기관의 경영활동 또는 사업 관계의 결과로 인해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모색

# □ 평가분야

○ 기관운영 11개 분야(90개 지표), 주요사업 2개 분야(14개 지표)

- 기관운영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등 11개 분야

- 주요사업 :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장애인편의증진사업' 대상 2개 분야

<참고> 2021~2024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21년 수립)

구분	분야	사업명(해당부서)
'21년~'22년	직업재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직업재활부)
(완료)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우선구매지원사업(우선구매지원부)
'22년~'23년 <b>(완료)</b>	편의증진	장애인편의증진사업(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23년~'24년	정책연구	정책연구 및 정책지원사업 (정책연구부, 정책지원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평가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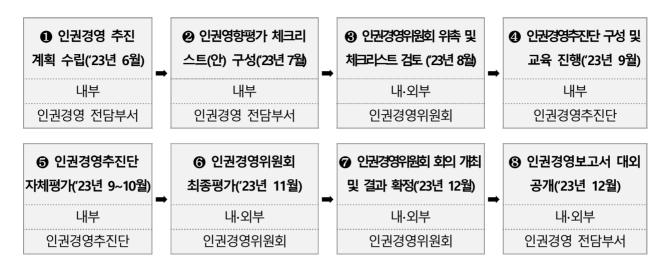
※ 평가 항목(지표 내용)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이전의 내용과 증빙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평가주체 및 방법

- (1차) 인권경영추진단 자체평가
  - 지표별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권경영추진단을 구성한 후 증빙에 기반을 둔 자체평가 실시
- (2차) 인권경영위원회 최종평가
  - 인권경영위원회 제1차 회의('23.8.3.)에서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담당 평가위원이 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1차 자체평가 결과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최종 평가(서면) 실시 후 회의를 통해 결과 확정

78	ΛШ	HOL	1차 자체평가	2차 최종평가
구분	순번	분야	분야별 담당부서	분야별 평가위원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전략기획부 사회적가치팀	문 상 윤
	2	고용상의 비차별		김 태 규
	3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경영지원부 인사혁신팀	윤 문 희
	4	강제 노동의 금지		김 주 연
기관운영	(5)	산업 안전 보장	이룸센터관리부 안전관리팀 경영지원부 인사혁신팀	김 주 연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경영지원부 인사혁신팀	오 남 주
	7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소통홍보팀	윤 문 희
	8	환경권 보장	경영지원부 인사혁신팀	이 찬 우
	9	갑질근절	법무감사팀	최 동 규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무감사팀	김 주 연
	11)	성희롱 성폭력 예방	경영지원부 인사혁신팀	최 동 규
<b>5010</b>	1	사업운영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이 찬 우
주요사업	2	교육운영	UD환경정책기획팀	문 상 윤

### □ 추진과정



### □ 평가결과 측정방법

- O 이전 평가('21년도 인권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지표 점수체계를 유지하여, 답변에 따른 평가결과를 점수화(100% 만점 기준)함.
  - 예/보완필요/아니오 답변의 경우 순서대로 5점, 3점, 0점을 부여하고, 정보없음/해당없음 답변은 평가결과에서 제외
  - (산식) (해당항목 지표점수의 총합) / (5×해당항목 지표수)×100

	답변결과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5점	3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평가 결과

# □ 평가 결과

O (종합 평가결과) '23년 종합점수 98% (기관운영 98%, 주요사업 97%)

	전체				종합 점수			
구분	지표수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00% 만점 기준)
종 합	104개	94개	5개	-	-	5개	<b>→</b>	98%
기관운영	90개	81개	4개	-	-	5개	<b>→</b>	98%
주요사업	14개	13개	1개	-	-	-	<b>→</b>	97%

<sup>※</sup> 기관과 해당 없는 지표의 경우 '24년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구성 시 포함 여부 검토 예정

O (분야별 평가결과) 총 13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ī	분야별 점수			
구분	분야	지표수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00% 만점 기준)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13	11	2				94%
	고용상의 비차별	16	16					100%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13	10				3	100%
	강제 노동의 금지	5	5					100%
	산업 안전 보장	16	13	1			2	97%
기관 운영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	2					100%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3	3					100%
	환경권 보장	7	6	1				94%
	갑질근절	4	4					1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	7					100%
	성희롱·성폭력 예방	4	4					100%
주요	사업운영	8	8					100%
사업	교육운영	6	5	1				93%

# O (하위 항목별 평가결과) 인권경영 성과 등 5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답변결괴	•		항목별
분야	하위 항목	지표	ΛI	보완	아니	정보	해당	점수
	• .	수	예	필요	요 요	없음	없음	(100%면점7중
	인권존중 정책선언	1	1					10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2	2					100%
인권경영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3	3					100%
체제의 구축	인권경영 성과	5	4	1				92%
	구제절차 마련	2	1	1				80%
		13	11	2				94%
	고용상 비차별	5	5					100%
고용상의	고용상 남녀비차별	6	6					100%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3					100%
-1112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2	2					100%
		16	16					100%
결사 및 단체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3				1	100%
교섭의 자유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4	4					100%
보장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5	3				2	100%
		13	10				3	100%
강제	강제 노동 금지	5	5					100%
노동의 금지		5	5					100%
	작업장 안전	5	4				1	100%
산업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3	1				90%
인 급   안전 보장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5	4				1	100%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2	2					100%
		16	13	1			2	97%
책임 있는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2	2					100%
공급망 관리		2	2					100%
현지주민의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3	3					100%
인권 보호		3	3					100%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4	4					100%
환경권 보장	비상계획 수립	3	2	1				<b>87</b> %
		7	6	1				94%
31.71.3.71	갑질 근절과 구제조치	4	4					100%
갑질근절		4	4					100%
직장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구제조치	7	7					100%
괴롭힘 금지		7	7					100%
성희롱·성폭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4	4					100%
력 예방		4	4					100%
	사업준비	3	3					100%
사업	사업수행	3	3					100%
은영 	결과확산	2	2					100%
E 0		8	8					100%
	교육준비	3	2	1				87%
교육	교육실시	3	3					100%
운영	— I = I	6	5	1				93%
		J	5					93/0

### □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의견

### ○ 기관운영 분야

###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개발원은 인권이슈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인권경영헌장 개정 및 선언, 전담부서 지정,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경영추진단 구성·운영, 전문가 참여를 통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성과의 정기적 보고와 대내외 공개,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함.
- 다만, 인권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인권경영지수와 같은 조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의 구제절차 (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갑질 등)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종합적인 안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추가로, 인권경영 체제 구축의 강화를 위해 인권영향 평가의 매년 실시, 전 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과 내재화도 권장함.

### 2) 고용상의 비차별

- 개발원은 취업규칙에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여 남녀,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 차별하지 않고 노동자 모집 시에도 해당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 제시하여 고용 전반에서 차별하지 않고 있음.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개발원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여 현재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근로자위원 워크숍, 사내 망에 근로자게시판 및 내부 직원 메신저에 근로자대표 별도 표기 등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강요한다거나 활동에 따른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으며 이를 인사관리규정에도 명시하고 있음. 또한, 노동자대표에게 조직진단, 인력운영계획, 예산(안) 등 기관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4) 강제 노동의 금지

- 개발원은 취업규칙에 의거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근로 계약시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또한, 연장근로는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음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준수하며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 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고 있음.

### 5) 산업 안전 보장

- 개발원은 안전관리 계약을 실시하여 연중 작업장 안전 관리, 기관 건물의 비상탈출구 등을 상시 및 분기별 시설안전점검 실시,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의 정기 실시, 노동자에 대한 건강 진단 실시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임산부 및 장애인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을 한 노동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지 변경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 건물의 BF인증을 유지하며 시설물 접근과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임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음.
- 다만, 개발원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 등 보호해야 함을 취업규칙에는 포함하고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개발원은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 이행시 청렴계약, 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공급업자 등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장치를 마련하여 모든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7)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개발원은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타 기관의 지적재산권 이용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하고 활용 시에 출처 명시를 분명히 하는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 8) 화경권 보장

- 개발원은 매년 ESG 경영추진계획을 수립·추진,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록, 정부 온실가스 배출 기준 준수를 위한 기관 사용량 정기 점검, 전 직원 대상 ESG 교육 실시 및 환경정화 사회공헌활동 추진 등을 통해 환경경영 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하고 있음. 또한,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정해진 대응지침에 따른 정기 훈련 실시, 건물관리 안전부서 및 기관 보안업체 연락망 구축 등의 장치를 마련해 둠.
- 다만, 개발원이 관리하는 이룸센터 건물의 합동소방훈련 시 개발원 직원들이 건물 내 입주한 장애인단체의 중증장애인들을 도우면서 함께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 추가로, 개발원 차량 대폐차시 전기자동차 교체를 권장함.

### 9) 갑질근절

- 개발원은 갑질 근절을 위해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 규정 마련 및 준수,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등을 명시하고 피해자 불이익 처우금지, 2차 피해방지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함.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관리자 청렴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함.
- 추가로, 온라인 교육 이외에 세미나, 대면교육 등 더욱 효과적인 갑질근절 교육방향성을 마련하길 권장함.

###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개발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제보시스템 (K휘슬,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통합운영) 운영, 고충상담원을 통한 신고 안내, 연간 갑질근절 대책을 수립, 예방교육 및 상호존중의 날캠페인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당조직 운영, 직장 내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기간 및 사실 인정 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고 있음.

### 1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 개발원은 취업규칙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4대폭력 예방교육 및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또한, 사내 자체

양성평등 캠페인 추진과 온오프라인 고충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함 으로써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예방·대응을 하고 있음.

- 추가로, 온라인 캠페인 이외의 참여형 프로그램의 활성화 지원을 권장함.

### ○ 주요사업 분야(장애인편의증진사업)

### 1) 사업운영

- 개발원은 장애인등편의법,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등에 따라 사회적 현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기획,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로 개인정보 보호, 홈페이지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업을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 사업 관련 안내(홍보)자료에 보이스아이 삽입, 점자 표기 등을 통해 장애유형별 정보접근 편의성 보장을 위한 수단을 제공, 유니버설디자인 공모대전 등 주요 행사의 심사위원에 장애 당사자, 국내외 장애인단체가 참여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수행 등 사업 전반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공감주간 운영을 통해 진행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전시체험(모두가 누리는 휴식 등)을 통해 다양한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접근성 향상 및 인식개선 확산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2) 교육운영

- 개발원은 교육 운영시 필수 정보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교육 장소와 방식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교육생이 포함된 경우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편의를 제공함. 또한,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대상자의 민원 및 불편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음.
- 다만, 개발원이 주관·진행하는 교육의 수강자(수강희망자) 대상으로 교육 접수, 변경 등의 안내 시 교육비 환불 내용을 포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이 필요함.
- 추가로,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인권존중의무 이행에 관한 서약서를 받는 등 교육내용에도 인권침해요소가 없도록 사전 예방을 권장함.

# Ⅴ 인권경영지수 시범측정 결과

# □ 측정 목적

○ 인권경영 이행 실태 및 수준, 효과를 계량화하여 측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PDCA 평가시스템인 인권경영지수 측정값 산출 및 분석을 통해 '24년도 및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 측정 지표

분류	지표	항목별 배점	분류별 배점 합계
	인권경영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 여부	5	
계획	인권경영지침 제정 여부	5	
기복 (Plan)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여부	5	25
(Fiail)	인권경영헌장 선언 및 공표 여부	5	
	인권경영 이행 추진계획 수립 여부	5	
	인권교육 실시 여부	5	
	인권경영 시행에 근로자대표의 참여 여부	5	
집행	이해관계자의 정기적 참여 여부	5	30
(Do)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여부	5	50
	여성인권 보장 여부	5	
	인권확산 캠페인 실시 여부	5	
	인권영향평가실시(기관운영, 주요사업) 여부	10	
평가	권고·개선사항 및 성과지표 이행 점검 여부	5	25
(Check)	민원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5	23
	인권위험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여부	5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주요 인권이슈의 도출	5	
환류	인권이슈 발굴 및 대응계획 수립 여부	5	20
(Action)	인권경영보고서 공개 여부	5	20
	피해자 구제조치 결과 학습 및 개선 여부	5	
	인권침해사건 발생건수	-1	
가감점	산업재해 발생건수	-1	
7188	가족친화경영 인증 유지	+1	_
	지역사회 공헌인정제 인증 획득	+1	
종합	[전체 4분류] 지표 19개, 가·감점지표 4개	총합 1	00점 만점

### □ 측정 결과

- 인권경영 담당부서(전략기획부 사회적가치팀)에서 지표별 관련근거에 따른 배점항목을 체크하여 점수 산정결과 **총점 90점**(100점 만점) **획득**
- O P-D-C-A 과정 중 <u>환류(Action)</u>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 되고, 평가(Check) 부분이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분류	지표	배점	측정	합계
	종합 점수	90	<b>)점</b> (100	점 만점)
	인권경영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 여부	5	5	
ᅰ섷	인권경영지침 제정 여부	5	5	
계획 (Plan)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여부	5	5	<b>23</b> (92%)
(i idii)	인권경영헌장 선언 및 공표 여부	5	4	(3270)
	인권경영 이행 추진계획 수립 여부	5	4	
	인권교육 실시 여부	5	4	
	인권경영 시행에 근로자대표의 참여 여부	5	3	
집행	이해관계자의 정기적 참여 여부	5	5	27
(Do)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여부	5	5	(90%)
	여성인권 보장 여부	5	5	
	인권확산 캠페인 실시 여부	5	5	
	인권영향평가실시(기관운영, 주요사업) 여부	10	10	
평가	권고·개선사항 및 성과지표 이행 점검 여부	5	4	24
(Check)	민원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5	5	(96%)
	인권위험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여부	5	5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주요 인권이슈의 도출	5	5	
환류	인권이슈 발굴 및 대응계획 수립 여부	5	4	16
(Action)	인권경영보고서 공개 여부	5	4	(80%)
	피해자 구제조치 결과 학습 및 개선 여부	5	3	
	인권침해사건 발생건수	-1	-1	
가감점	산업재해 발생건수	-1	-1	_
1100	가족친화경영 인증 유지	+1	+1	-
	지역사회 공헌인정제 인증 획득	+1	+1	

# ☐ 주요 개선과제

분류	지표	개선과제			
	인권경영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 여부				
ᅰᅿ	인권경영지침 제정 여부	• 인권경영헌장을 매년 점검 및 개선			
계획 (Plan)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여부	• 매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시 이해			
(i idii)	인권경영헌장 선언 및 공표 여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인권경영 이행 추진계획 수립 여부				
	인권교육 실시 여부				
	인권경영 시행에 근로자대표의 참여 여부	• 대내외 이해관계자 모두가 인권교육을			
집행	이해관계자의 정기적 참여 여부	수강할 수 있도록 실시			
(Do)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여부	• 인권경영 시행에 근로자대표가 적극 참여			
	여성인권 보장 여부	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인권확산 캠페인 실시 여부				
	인권영향평가실시(기관운영, 주요사업) 여부				
평가	권고·개선사항 및 성과지표 이행 점검 여부	• 인권영향평가 권고개선사항과 인권 경영 성과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			
(Check)	민원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하고 관리			
	인권위험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여부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주요 인권이슈의 도출	• 주요 인권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환류	인권이슈 발굴 및 대응계획 수립 여부	계획 수립과 실행 • 인권경영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Action)	인권경영보고서 공개 여부	대내외 공개			
	피해자 구제조치 결과 학습 및 개선 여부	• 피해자 구제조치 결과에 대한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및 개선 조치			
	인권침해사건 발생건수				
가감점	산업재해 발생건수	• 성희롱 등 대내외 인권침해사건의 예방을 위해 교육 등 확대			
1166	가족친화경영 인증 유지	•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추진			
	지역사회 공헌인정제 인증 획득				

# 붙임

# KODDI 인권경영지수 지표 세부평가내용

분류	지표	항목별 배점
	인권경영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 여부	
	5점 인권경영 담당 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 4점 인권경영 담당 부서만 지정된 경우 3점 인권경영 담당자만 지정된 경우 2점 인권경영 도입을 하였으나 담당 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0점 인권경영 도입을 하지 않은 경우	5점
	인권경영지침 제정 여부	
	5점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4점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였지만 제도가 미비한 경우 0점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5점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여부	
계획 (Plan)	5점 대내외 이해관계자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4점 내부 이해관계자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3점 대내외 이해관계자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하지 않은 경우 2점 내부 이해관계자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하지 않은 경우 0점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5점
	인권경영헌장 선언 및 공표 여부	
	5점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여 대내외에 선언·공표하였으며, 매년 점검하는 경우 4점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여 대내외에 선언하고 공표한 경우 3점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였으나 대내외에 공표하지 않은 경우 0점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5점
	인권경영 이행 추진계획 수립 여부	
	5점매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독립적인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4점매년 독립적인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3점매년 윤리 및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0점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5점
	인권교육 실시 여부	
	5점대내외 이해관계자가 인권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경우4점내부 이해관계자가 인권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경우3점국가의 인권관련 의무교육만을 수강하는 경우0점인권관련 교육 미실시한 경우	5점
	인권경영 시행에 근로자대표의 참여 여부	
집행	5점인권경영 시행에 근로자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고하는 경우4점인권경영 시행에 근로자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보고하는 경우3점인권경영 시행을 근로자대표에 보고하는 경우0점인권경영 시행을 근로자대표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5점
(Do)	이해관계자의 정기적 참여 여부	
	5점인권경영이행 추진계획,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교육을 포함한 모든이행에 이해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4점 인권경영이행 추진계획,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교육 중 2가지 이상에 이해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인권경영 이행 추진계획,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교육 중 1가지 이상에 이해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5점
	2점 인권경영 이행 추진계획,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교육 중 1가지에 이해 관계자가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권경영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분류	지표	항목별 배점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여부	
	5점인권 문제제기하는 방식에 있어 독립적인 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비밀보장이 되며,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 경우	
	4점 인권 문제제기하는 방식에 있어 비독립적인 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비밀보장이 되며,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 경우	5점
	3점 인권 문제제기하는 방식에 있어 비독립적인 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비밀보장이 되지만, 불이익 처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인권 문제제기하는 방식에 있어 비독립적인 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지만,	
	2점 비밀보장과 불이익 처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0점 인권 문제제기하는 접수 창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여성인권 보장 여부	
	5점정부 권고사항인 여성임원 비율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4점정부 권고사항인 여성임원 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5점
	0점 정부 권고사항인 여성임원 비율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권확산 캠페인 실시 여부	
	5점         인권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경우           4점         인권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을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5점
	0점 인권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권영향평가실시(기관운영, 주요사업) 여부	
	10점 외부전문가에 의한 기관운영분야 및 주요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사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우 기관운영분야 및 주요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사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우 이브저무가에 이하 기과으여보아 또는 주어사업보아 이권역향평가를	10점
	6台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사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우4저기관운영분야 또는 주요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10 🗎
	사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우 기관운영분야 또는 주요사업분야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사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우	
	0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권고·개선사항 및 성과지표 이행 점검 여부	
평가	5점 인권영향평가 권고·개선사항 및 인권경영 성과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관리한 경우	5점
(Check)	4점 인권영향평가 권고·개선사항 및 인권경영 성과지표를 점검한 경우 0점 인권영향평가 권고·개선사항 및 인권경영 성과지표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	
	민원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	
	7점 기관 외부 및 내부 민원해결을 위해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적절한 조취를 취하는 경우 기관 외부 또는 내부 민원해결을 위해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r 74
	적절한 조취를 취하는 경우 기관 외부 또는 내부 민원해결을 위해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5점
	○□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못한 경우 ○점 기관 외부 또는 내부 민원 해결을 위해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권위험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여부	
	5점 인권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하기 위한 인력 및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4점 인권위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 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3점 인권위험을 비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5점
	0점 인권위험을 모니터 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분류		지표	항목별 배점
	인권	영향평가를 통한 주요 인권이슈의 도출	
	5점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했고 그 결과 주요 인권이슈를 적정하게 도출한 경우	- 71
	4점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했지만 절차나 결과 물에서 상당한 결함(자료 제공 부실, 사회적 이슈 미반영 등)이 있는 경우	5점
	0점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주요 인권 이슈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혹은 그에 준하는 경우	
	인권	이슈 발굴 및 대응계획 수립 여부	
	5점 4점	주요 인권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의 대응계획과 실행이 적정한 경우 주요 인권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계획 또는 실행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5점
환류	0점	주요 인권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계획이 없거나 실행이 없는 경우, 혹은 그에 준하는 경우	
(Action)	인권	경영보고서 공개 여부	
	5점 4점 3점 0점	인권경영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대내외에 공개하는 경우 인권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에 공개한 경우 인권경영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대내외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인권경영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점
	자 구제조치 결과 학습 및 개선 여부		
	5점	피해자 구제조치 결과에 대한 전사 교육을 진행하고, 개선을 위한 조취를 취한 경우	
	4점 3점 2점 0점	피해자 구제조치 결과에 대한 전사 교육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피해자 구제조치 결과에 대한 일부 대상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 경우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 지고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점
	인권	침해사건 발생건수	
	-1점	기관의 경영과 사업 시행으로 인해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결정되거나, 기관 내부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로 결정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1점)
-17171	산업	재해 발생건수	(-1점)
가감점	-1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 단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0)
	가족	친화경영 인증 유지	(+1점)
	+1점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위해 노력하여 인증을 유지한 경우	
		<b>사회 공헌인정제 인증 획득</b> 지역사회 공헌인정제 인증을 위해 노력하여 인증을 획득한 경우	(+1점)

# VI 인권침해 구제절차

### □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 운영

- (목적)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진행, 피드백의 구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
- (내용) 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기존의 구제절차를 파악하고 연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체계 구축

### □ 신청대상

- O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 단체
- O 인권침해 사실을 알거나 정보를 보유한 제3자

### □ 처리과정

상담	⇒	접수	⇒	사전조사	⇒	위원회 심의	⇒	시정조치 및 당사자 통보
- 침해, 차별 행위 발생		<ul> <li>(사회적가치팀)</li> <li>인권침해</li> <li>(법무감사팀)</li> <li>갑질, 직장</li> <li>내 괴롭힘</li> <li>(인사혁신팀)</li> <li>성희롱.성폭력</li> </ul>		- 진출청취 또는 진술서 검토, 필요 시 현장 조사		- 해당 위원회 회부 및 심의		-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등

### □ 신청방법

- O 홈페이지 신고: https://www.koddi.or.kr/intro/civil04.jsp
- O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Corp/main/

	• 처리대상 : 한국장애인개발원 모든 직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5
그취ᅴ이이치	조에 의한 고충사항
고충처리위원회	• 고충처리위원 지정(사측 2명, 노측 2명)
	• 신고방법 : 고충처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관련 내부 지침 : 고충처리지침
	• 처리대상 : 한국장애인개발원 모든 임직원 및 개발원 통제 범위 내에
나는 그 나 그 그	있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포함
성희 <del>롱</del> 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T000 01	• 신고방법 :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 가능
	• 관련 내부 지침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 처리대상 : 내·외부 전체
갑질피해	• 담당부서 : 법무감사팀
신고·지원센터	• 신고방법 : 익명(익명제보시스템 헬프라인 활용) 및 실명신고(서면)
	• 관련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
	• 처리대상 : 내·외부 전체
	• 담당부서 : 법무감사팀
이면레티시스템	• 신고방법 : 익명제보시스템 헬프라인
익명제보시스템	• 제보범위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기타 비윤리적 행위, 갑질피해신고
	• 관련안내 : 한국장애인개발원 익명제보신고 가이드라인

# Ⅷ 향후 계획

- □ 2023년 인권경영보고서 대내외 공개('23년 12월)
  - 기관 누리집의 인권알리미 게시판을 통해 인권경영보고서 대외 공개
- □ 주요 인권이슈를 대응하고 보완하기 위한 '24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24년~)
  - '23년도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지수 측정, 인권이슈 설문 등을 통해 파악된 인권 취약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주요 인권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차년도 사업계획 및 인권경영추진계획 수립・이행